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24시간 내 이행 명확화 >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41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24시간 내 이행 명확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1.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 24시간 내 이행 명확화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물리적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신속한 삭제와 유통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1. ~ 3. (생략)
② ~ ⑥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나 신고·삭제 요청이 있으면, 부가통신사업자 및 웹하드 운영자 등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구성된 ‘조치의무사업자’는 이를 인식하는 즉시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당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지체 없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24시간 이내라는 구체적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이행 기준 또한 분명해질 것으로 보임.
- 이를 통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강화되며, 신속한 삭제 조치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예외 요건 추가 필요**

- 방대한 콘텐츠를 전자적 장비로 처리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

무 특성상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대규모 정전, 화재 등) 등과 같은 기술적·현실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장애를 고려하여 24시간 이내 조치 의무를 규정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으면’과 같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식 요건의 추가 필요

- 현행법은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나, 동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받은 경우’로 변경하면서 ‘인식’ 요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임.
- 해당 부분의 주어는 ‘조치의무사업자’이고, 목적어는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인바, 동 개정안에서 사용된 행위 부분인 ‘받은 경우에는’라는 표현은 문장 구조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요청이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

우에는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현행 수준의 ‘인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동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조치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24시간 이내에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정당한 사유로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같은 단서 조항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식별·게재제한 조치는 현재 대부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휴무일 등으로 인해 당일 대응이 곤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동 개정안에 ‘24시간 이내’와 같은 물리적 시간을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 차단 조치를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모호한 ‘지체 없이’ 규정보다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사업자의 책임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 등을 예외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인식 요건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